기 안 용 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교통2038-10512 (전화번호)	전결규정 조 항	시 장 전결사항
처리기간		부 시 장	
시행일자			418
보존년한			

보조기관	국 장		결재 부시장	교통운수국장
	부국장			
	과 장			법무담당관 〈심사필〉
기안책임자	경정 김형래		조	

경 유 수 신 참 조	수신처 참조	발 신	시 장	통 제	
제 목	도로교통법에 의한 고시제정				

고시제 116 호

도로 교통법 제44조 7항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운전자 준수사항을 고시로 제정 실시코저 합니다

정서

관인

발송

0201-1-8A (갑)
1969.11.10 승인

190mm×268mm (2급인쇄용지 60g/m²)
조 달 청 (1,000,000매 인쇄)

제 정 이 유

도로 교통법에 의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제하여 각종 위해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케 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코저 함

0201—1—43A (2—2)
1972. 12. 29 승 인

190mm×268mm (2급인쇄용지60g/m²)
조 달 청 (2,000,000매 인 쇄)

고시안심사	1977. 4. 20	제 17 0 호
심 사 자	법제계장	법무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도로교통법에 의한 [redacted] 고시

도로 교통법 제44조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77년 4월 20일

서 울 특 별 시 장

1 〔운전자의 준수사항〕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가. 제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.

나. 택시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~~승객의 승차에 방해~~ 합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

다 택시.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구정된 요금 (메타기에 의한 요금) 이외의 요금을 요구 하거나 징수 하여서는 아니된다

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의 운전자는 허가

없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58조
의 유상운송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